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32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4.

발 의 자 : 소병훈·안태준·박 정
박희승·용혜인·전현희
이개호·허 영·강준현
부승찬·조계원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과목별 전공의의 정원을 각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지역별 의료 수요나 전문과목별 실제 의사 인력의 편재 상황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역별·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부재한 실정임. 이에 따라 실제 의료 현장의 수급 불균형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여 전공의 정원 배정에 반영하기 어렵고 특정 지역 및 전문과목으로의 전공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의 전공의 정원을 정할 때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에 따른 ‘의사편재지표’를 고려하도록 하여 지역별·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77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32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전문의”를 “그 밖에 전문의”로 한다.
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련을 받을 의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전문과목별 정원을 의료기관, 대학 등 수련 실시 기관 별로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사의 정원에 대하여는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 제9조의2에 따른 의사편재지표를 고려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문과목별·수련 실시 기관별 정원 배정에 관한 경과조치) 제7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 제9조의2에 따른 의사편재지표가 공포되기 전까지 전문과목별·수련 실시 기관별 정원 배정에 관하여는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.

